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도선관계법령집

2024. 6. 28.



사단
법인 **한국도선사협회**
Korea Maritime Pilots' Association

도 선 관 계 법 령 집

(導船關係法令集)

2023. 12. 29. (도선법, 法)

2024. 06. 25. (시행령, 令)

2024. 06. 28. (시행규칙, 則)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목 차

1. 도선법(법률 제19867호 2023.12.29)	7
2. 도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05호 2024.6.25)	7
3. 도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676호 2024.6.28)	7
4. 시행령 서식	55
5. 시행규칙 서식	61
6. (구)도선관계법령 중 도선사 정년연장 관련 조항	83
7. 도선구간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3호 2024.5.17)	87
8. 도선약관(2009.4.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	95
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01
10.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지 서식	125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7	제1조(목적) 7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7		
제3조(적용 범위) 7		
제2장 도선사면허 등		
제4조(도선사면허) 8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8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8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9 제4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9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10 제6조 삭제 10 제7조(실무수습) 11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9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기준) 9 제2조(승무경력) 10 제2조의2 삭제 11	제7조의2 삭제 12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10		
제6조(결격사유) 10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12	제3조(보수교육) 13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12 제9조(교육의 실시 등) 12
제6조의3 삭제 14	제3조의2 삭제 13	제9조의2 삭제 14 제9조의3 삭제 14 제9조의4 삭제 14
제6조의4 삭제 16	제3조의3 삭제 13	제9조의5(도선사의 정년연장) 14 제9조의6 삭제 15 제10조(신체검사) 15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18 제12,13조 삭제 18
제7조(도선사의 정년) 14		
제8조(신체검사) 15		
제9조(면허의 취소 등) 16		
제10,11,12조 삭제 1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19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19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19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20	
제15조(시험) 20		
제16조(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20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20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21 제8조(도선사 시험) 22 제9조(합격자 공고 등) 23 제10조 삭제 23	제14조(응시원서) 20 제15,16조 삭제 23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제17조(도선구) 23		제17조(도선구) 23
제18조(도선) 23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24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24		
제19조(도선의 제한) 25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25	
제20조(강제 도선) 25	제10조의3 삭제 25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25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26	
	제12,13,14,15,16,17,18조 삭제 26	
제21조(도선료) 28		제19조(도선구간) 28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28
		제21조 삭제 29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29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29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30		제23조(도선훈련) 29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30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 30		
제26조(도선기 등) 30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30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31		제25조(도선선의 의장) 31
		제26조 삭제 31
제28조 삭제 31		제27조 삭제 31
제4장 보칙		
제29조(보고·검사) 32		제28조(보고) 32
제30,31,32,33,34조 삭제 32		제29조(삭제) 32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32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32	
제35조 삭제 35	제18조의3(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34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34	
	제18조의5(협의회의 회의) 35	
	제18조의6(협의회의 운영규정) 35	
제36조(도선약관) 35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35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36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36	제31조 삭제 36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37		
제38조(수수료) 37		제32조(수수료) 37
		제33조(규제의 재검토) 38
제5장 벌칙		
제39조 (벌칙) 39		
제39조의2(벌칙) 39		
제40조(벌칙) 40		
제41조(과태료) 4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0	
부칙	부칙	부칙

[법령 연혁]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정 1961. 12. 6 법률 제 812호 일부개정 1962. 8. 13 법률 제1125호 일부개정 1966. 2. 28 법률 제1749호 일부개정 1973. 2. 7 법률 제2495호 타법개정 1977. 12. 16 법률 제3011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8. 12. 5 법률 제3147호 전부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08호 타법개정 1993. 3. 10 법률 제4546호 (해운법) 일부개정 1995. 1. 5 법률 제4926호 일부개정 1997. 1. 13 법률 제5289호 타법개정 1999. 2. 5 법률 제5809호 (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17호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610호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88호 타법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9호 (항만법)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9. 2. 6 법률 제9443호 타법개정 2009. 6. 9 법률 제9773호 (항만법) 타법개정 2009. 12. 29 법률 제9873호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011. 6. 15 법률 제10801호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제정 1962. 3. 10 각 령 제 528호 개정 1962. 4. 27 각 령 제 711호 개정 1963. 11. 20 각 령 제 1641호 개정 1964. 6. 24 대통령령 제 1854호 개정 1968. 2. 17 대통령령 제 3375호 개정 1969. 1. 14 대통령령 제 3730호 개정 1969. 9. 10 대통령령 제 4042호 개정 1973. 9. 25 대통령령 제 6871호 개정 1974. 6. 28 대통령령 제 7184호 개정 1976. 12. 31 대통령령 제 8411호 개정 1977. 12. 30 대통령령 제 8794호 개정 1979. 8. 27 대통령령 제 9572호 개정 1981. 1. 7 대통령령 제10155호 개정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20호 개정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8호 타법개정 1991. 4. 18 대통령령 제13353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타법개정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타법개정 1994. 12. 21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5. 11. 6 대통령령 제14800호 타법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타법개정 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 7. 28 대통령령 제15444호 개정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2호 개정 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6호 타법개정 1999. 8. 23 대통령령 제16541호 (해난심판법시행령) 개정 2002. 11. 14 대통령령 제17784호			제정 1973. 11. 6 교 통 부 령 제459호 개정 1974. 12. 16 교 통 부 령 제496호 개정 1976. 5. 31 교 통 부 령 제538호 개정 1977. 4. 7 교 통 부 령 제560호 개정 1980. 2. 1 교 통 부 령 제650호 개정 1988. 3. 18 교 통 부 령 제877호 개정 1988. 8. 17 교 통 부 령 제887호 개정 1991. 1. 11 교 통 부 령 제943호 개정 1993. 2. 2 교 통 부 령 제998호 개정 1996. 5. 13 건설교통부령 제 65 호 개정 1997. 11. 25 해양수산부령 제 35 호 개정 1999. 5. 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개정 1999. 8. 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개정 2002. 11. 21 해양수산부령 제240호 개정 2003. 12. 31 해양수산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 등) 개정 2005. 12. 23 해양수산부령 제319호 개정 2006. 6. 29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타법개정 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 4호 개정 2009. 8. 7 국토해양부령 제154호 타법개정 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1. 4. 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경제활성화및친서민국민불편해소등을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1. 9. 22 국토해양부령 제384호 타법개정 2012. 6. 11 국토해양부령 제473호 (행정처리기간단축및수수료합리화를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법령 연혁]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일부개정 2013. 5. 22 법률 제11805호 일부개정 2014. 3. 18 법률 제12477호 타법개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5. 3. 27 법률 제13265호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729호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3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8호 타법개정 2020. 1. 29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5호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95호 타법개정 2023. 7. 25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12. 29 법률 제19867호	타법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개정령) 개정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5호 개정 2006. 6. 29 대통령령 제19577호 타법개정 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6호 개정 2011. 9. 22 대통령령 제23157호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4호 개정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9호 개정 2022. 7. 4 대통령령 제32760호 타법개정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52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2024. 6. 25 대통령령 제34605호	타법개정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 1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2013. 10. 24 해양수산부령 제 48호 타법개정 2013. 12. 30 해양수산부령 제 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014. 6. 23 해양수산부령 제 83호 타법개정 2014. 12. 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개정 2016. 5. 19 해양수산부령 제191호 타법개정 2017. 1. 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타법개정 2017. 3. 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개정 2017. 7. 5 해양수산부령 제246호 개정 2017. 9. 22 해양수산부령 제256호 개정 2018. 12. 19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개정 2019. 9. 30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개정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타법개정 2020. 7. 30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2021. 3. 4 해양수산부령 제474호 개정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개정 2023. 2. 16 해양수산부령 제582호 타법개정 2024. 2. 5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4. 6. 28 해양수산부령 제676호

※ 원문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2장 도선사면허 등 제4조(도선사면허)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개정 2017.3.21.>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7.3.21.>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	제1조의2(도선대상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4., 2024.1.16.> 1. 1급 도선사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제2조(도선사면허의 신청)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6.30.>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7.9.21.]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위험화물운반선은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개정 2022.7.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9.19.]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09.8.7.]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제1조의3(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1급 도선사 :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 4 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 제2조에 따라 도선사면허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신청자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도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 각 호에 따른 등급별 경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선사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있을 것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2.6.]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를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 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2.18.]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2. 2급 도선사 :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전문개정 2017.9.19.]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2조의2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1.] 제5조(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5., 2021.6.30.>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적은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1. 도선사면허증 2.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 6 조 삭제<1991.1.11. 교통부령 제943호>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2.6.]		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수습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② 도선수습생은 제1항의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19조에 따른 도선구간(실무수습 기간 중에 선박 입항·출항 횟수가 10회 미만인 도선구간은 제외한다)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회의 범위에서 도선구간별 승선 횟수를 포함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도선수습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하 “도선사후보자”라 한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승무경력 가산점, 필기점수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도선구별로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도선구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사후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자로 하여금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도선사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도선사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제7조의2 삭제 <2017.9.21., 해양수산부령 제256호> 제8조(도선사면허의 갱신)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 2.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받은 교육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17.9.21.] 제9조(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제6조의3 삭제 <2023.12.29.> 제6조의4 삭제 <2023.12.29.>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7.9.19.] 제3조의2 삭제 <2024.6.25.> 제3조의3 삭제 <2024.6.25.>	같다. <개정 2024.6.28.> 1. 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의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2. 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 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 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목 3. 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 평가방법 5. 교재편찬계획 6. 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1.]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7조(도선사의 정년) 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9.18., 2023.12.29.>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신설 2023. 12. 29.>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 삭제 <2024.6.28.> 제9조의3 삭제 <2024.6.28.> 제9조의4 삭제 <2024.6.28.> 제9조의5(도선사의 정년연장)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선사를 말한다. <신설 2024.6.28.>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도선사(같은 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어 있는 도선사로서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도선사를 포함한다) 2. 도선 시 승하선 안전 및 체력·건강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7시간 이상 이수한 도선사. 이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력 인증의 체력 항목 중 3분의 2 이상의 항목(근력을 측정하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8조(신체검사)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도선사. 이 경우 해당 체력 인증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선사 정년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의 연장을 받으려는 도선사는 정년이 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선사의 정년이 되기 전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8.> [본조신설 2018.12.19.] [제목개정 2024.6.28.] 제9조의6 삭제 <2024.6.30.> 제10조(신체검사)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9. 18., 2023.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2.6.]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3. 3. 23., 2013. 5.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0. 2. 18., 2023. 7. 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		다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10조 삭제 <1999.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 삭제 <1991.1.11. 교통부령 제943호> 제13조 삭제 <1999.5.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①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홀수(吃水), 기관(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방법, 예선(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7. 3.21.> [전문개정 2009.2.6.]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4.6.25.>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15조(시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3.3.23.>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 일시와 장소 3.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	제14조(응시원서) ①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9.22>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22., 2012.6.11., 2023.2.1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개정 2013.3.23., 2022.7.4.>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실	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응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험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9.22.> [전문개정 2009.8.7.]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 2023.1.1.] 제7조 제8조(도선사 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실무수습을 받게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제17조(도선구)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18조(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 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②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5.] 제10조 삭제<2002.11.14. 대통령령 제17784호> ※ 법 제16조에 신설·삽입<2002.1.14.>	제15조 삭제 <1999.5.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제16조 삭제 <1999.5.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5.> [전문개정 2009.8.7.]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3.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강제 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산(淸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산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산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치하기 위하여 입항·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7.9.19.] 제10조의3 삭제 <2009.8.5., 대통령령 제21666호> ※ 법 제20조제2항·제3항에 신설·삽입 <2009.2.6>	제18조(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의 도선(이하 “강제 도선”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장 및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항 및 경인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위험물 중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 액체류 또는 방사성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이하 “기름”이라 한다)을 실은 총톤수[분리평형수탱크(Segregated Ballast Tank)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말한다] 6천톤 이상의 선박[해당 위험물이나 기름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은 강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이 해당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횡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장의 입항·출항 횡수와 선박의 범위를 도선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횡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제12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13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14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15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16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17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18조 삭제<2006.6.29. 대통령령 제19577호>	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7., 2011.9.22., 2024.6.28.> 1.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동일한 도선구 내에 항로여건 등 입항·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별표 3의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에 입항하거나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횡수가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해당 선장과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 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해당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 해당 선장과 해당 유사선박. 이 경우 강제 도선의 면제대상 선박의 총톤수는 3만톤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다시 그 선박 또는 그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 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당 도선구에 입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하 “시운전 운항관리자”라 한다)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여 강제 도선을 받은 횟수가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강제 도선 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21조(도선료)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도선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한다)에 경력증명서(조선소에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하며, 해당 조선소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이하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5., 2020.7.30.> ⑧ 제7항에 따라 강제 도선의 면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실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 도선을 면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⑨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제19조(도선구간) 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제20조(도선료 등의 신고) 도선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선료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선료를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③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제3항에 따라 도선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⑤ 도선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09.2.6.]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4> 1.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 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 계약서로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1조 삭제<1996.5.13. 건설교통부령 제65호>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8.7.] 제23조(도선훈련)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09.2.6.]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훈련이나 실무수습을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선훈련을 받고 있는 도선사 및 도선수습생 각 1명과 함께 승선하더라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선장은 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도선한 도선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도선 시의 안전조치)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전문개정 2009.2.6.]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		장관은 도선사가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도선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9.21.>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50회의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09.8.7.] 제24 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도선사는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선과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선선의 장비와 의장(艤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도선료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9.1.15.> ⑥ 도선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09.2.6.] 제28조 삭제 <2009. 2. 6.>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중 에이치 기류(H깃발)에 따른다.<개정 2021.6.30.> ② 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계양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선선의 등화(燈火)·형상물 및 도선 신호방법 등은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25조(도선선의 의장)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선선의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4> 1. 선체의 외부는 흰색 또는 귤(Orange) 색으로 하여야 한다. 2. 선측에 영문으로 “PILOT”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6조 삭제<1996.5.13. 건설교통부령 제65호> 제27조 삭제 <2009.8.7., 국토해양부령 제154호>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4장 보 칙 제29조(보고·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삭제 <1999.2.8.> 제34조 삭제 <2005.12.29.>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	제28조(보고)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및 선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 일시·보고방법 및 보고할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7.5.> ②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일시·검사장소·검사목적 및 검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5.>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29조 삭제<1999.5.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3.23.>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3(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4(협회의 기능) ① 중앙협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5(협회의 회의) ①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8조의6(협회의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회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회의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회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3.21.>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3.21., 2022.1.4.>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전문개정 2009.2.6.]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3.3.23., 2017.9.19., 2018.12.18., 2024.6.25.>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삭제 1의4.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	3. 도선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7.] 제31조 삭제<1999.5.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6.9., 2020.1.29.>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3.23.>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9.19., 2022.7.4.>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전문개정 2009.8.5.]	제32조(수수료) ①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2.6.]		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6.11., 2017.7.5., 2023.2.16.> ③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5., 2023.2.16.> [전문개정 2009.8.7.]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4.6.>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4.6.> 6. 삭제 <2020.4.6.> [전문개정 2017.1.2.]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9.18.]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2018.9.1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3.27., 2020.2.1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를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제39조에서 이동]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09.2.6.] [제39조에서 이동 <2018.9.18.>] 제 40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2.6.]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1.15.>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8.5.]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부 칙 부 칙<제3908호, 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	부 칙 부 칙<제12338호, 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도선안전심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부 칙<교통부령 제877호, 1988.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선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 제5조제1호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546호, 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 칙<제4926호, 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료 및 도선선료로 본다. 부 칙<제5289호, 1997.1.13.>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6항 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부 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353호, 1991.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 199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 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제14800호, 1995.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 199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통부령 제887호, 1988.8.17.> 이 규칙은 198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통부령 제943호, 19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통부령 제998호, 1993.2.2.> 이 규칙은 199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5호, 1996.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료·할증도선료·도선대기료·도선취소료 및 도선선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5호, 1997.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15호, 1999.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은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선할 수 있다. 부 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 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 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 내지 ⑰생략 부 칙<제5917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선사협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 1997.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도선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내지 <33>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제15444호, 1997.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172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396호, 1999.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 1999.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고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부 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40호, 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포항 도선구에서의 강제도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지정된 목포항 도선구의 수역을 입·출항한 횟수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제도선의 면제여부의 결정을 위한 입·출항 횟수에 포함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63호, 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부 칙<제6610호,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제7788호, 2005.12.29.>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제17784호,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175호, 200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내지 <241>생략 부 칙<제19577호, 2006.6.2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19호, 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1호, 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도선구에 배치되는 도선수습생부터 적용한다. ③(정년연장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부 칙(港灣法)<제8379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第70條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9> 까지 생략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 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54호, 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과 제19조의 도선구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운항관리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강제 도선 면제를 받은 시운전 운항관리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 도선을 면제한다. 부 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6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제9443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도선사(제2항에 따른 도선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그 도선사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경과연수가 2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8호 도선법 일부개	<39>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 칙<제21666호, 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157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임기가 도래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84호, 2011.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73호, 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선법」에 따른 도선사 면허,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도선사 정년연장의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가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후 도선사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신체검사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 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체검사로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갈음한다. 제3조(음주도선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역이용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역이용료(연체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항만법) <제977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944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부 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제6항,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28334호, 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9389호, 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32760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단서, 제3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 11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제48호, 201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작성·제출하거나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89조”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해상교통안전법) <제9873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 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부 칙(해상교통안전법) <제10801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7항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 제1항”을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제11690호, 2013.3.23.>	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도선수습생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 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 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 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 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 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 행한다. <단서 생략>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제83호, 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제191호, 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7호, 2017.1.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제226호, 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6호, 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6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 제1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7조, 제18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제11805호, 2013.5.22.>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53호, 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대통령령 제34605호, 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	제2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선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같은 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4729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 면허증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도선사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도선사면허의 갱신 교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선 관련 교육(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집합교육으로서 21시간 이상 실시된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 도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 관련 증명서류는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2477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844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8>까지 생략 <229>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된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년 9월 21일까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로 본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94호, 2018.12.19.>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63호, 2019.8.14.> 이 규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4.6.>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20호, 2020.7.30.>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부 칙<제13265호, 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72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사면허의 등급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로 본다. 이 경우 도선경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로 하되,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 <table><tr><td>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td><td>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td></tr><tr><td>1종 도선사</td><td>1급 도선사</td></tr><tr><td>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2종 도선사</td><td>2급 도선사</td></tr><tr><td>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2종 도선사</td><td>3급 도선사</td></tr><tr><td>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2종 도선사</td><td>4급 도선사</td></tr></tabl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도선사에 대한 제8조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1종 도선사	1급 도선사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2종 도선사	2급 도선사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2종 도선사	3급 도선사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2종 도선사	4급 도선사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74호, 202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II.개별기준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582호, 2023.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3항, 별표 6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받은 도선사											
1종 도선사	1급 도선사											
도선경력이 2년 이상인 2종 도선사	2급 도선사											
도선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2종 도선사	3급 도선사											
도선경력이 1년 미만인 2종 도선사	4급 도선사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 기간은 해당 도선사가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달리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며,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도선사면허발급일”이라 한다)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면허 발급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제15783호, 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676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6278호, 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025호, 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8695호, 2022.1.4.>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573호, 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		

도 선 법	도 선 법 시 행 령	도 선 법 시 행 규 칙
호”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제1986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 서식>

[별표 1] <개정 2024. 6. 25.>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단위:%)
필기 및 면접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30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曳船)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潮位)정보시스템, 지문(地文)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
계		100

[별표 2] <개정 2022. 7. 4.>

승무경력가산점(제7조 제4항 관련)

승무경력	가 산 점 (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으로 할 경우)
1. 6년 이상 7년 미만	1점
2. 7년 이상 8년 미만	2점
3. 8년 이상 9년 미만	3점
4. 9년 이상 10년 미만	4점
5. 10년 이상	5점
비고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총톤수 10만톤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별표 3] <개정 2009. 8. 5.>

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 제2항 관련)

구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단위 : %)
면접	1. 항만 정보 : 도선구의 수로(水路), 항로표지, 정박요지, 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 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潮流) 등에 관한 사항	25
실기	선박 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曳船)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2	200만원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도선사가 승선·하선 구역에서 승선·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300만원
바.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200만원
사. 선장이 법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200만원
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이 승선·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만원
자.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선의 선장이 도선기를 달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2	100만원
차.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8호	300만원
카. 도선사 또는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	100만원

<시행규칙 서식>

[별표 1] <개정 2021. 6. 30.>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의제1항 관련)

검 사 항 목	합 격 기 준
1. 시 력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두 눈 모두 0.4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2. 청 력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
3. 색맹 및 안질환 여부	- 홍녹색맹 또는 청황색맹이 아닐 것 -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안질환이 없을 것
4. 일 반	-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증의 당뇨병이 없을 것 - 중대한 내분비(內分泌)장애 또는 대사(代謝)장애가 없을 것
5. 호흡기 계통	- 폐 또는 흉부의 수술로 인하여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후유증이 없을 것
6. 순환기 계통	- 심근장애, 관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7. 소화기 계통	- 소화기계통이나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 직장 또는 항문부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8. 혈액 및 조혈장기 (造血臟器)	-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 혈액 또는 조혈장기의 계통적 질환이 없을 것 -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검 사 항 목	합 격 기 준
9. 정신 및 신경계	- 중대한 머리외상의 병력 또는 머리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 중대한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을 것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 알코올 관련 장애가 없을 것
10. 운동기능	-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 손가락, 손, 팔뚝 또는 신체 각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 팔다리에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 기능의 장애가 없을 것
11. 이비인후계통	- 평행기능장애가 없을 것 - 비공(鼻孔), 부비강(副鼻腔) 또는 인후(咽喉).후두(喉頭)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비공의 통기를 심히 방지하는 비중격(鼻中隔)의 완막(宛膜)이 없을 것 - 구개편도(口蓋扁桃)의 심한 비대 또는 만성염증이나 축성인두염이 없을 것
12. 종 합	- 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을 중질환 또는 신체장애(결핵성질환, 신장질환, 뇌전증, 정신질환, 전염성질환, 간장질환, 신경장애, 언어장애, 기형이나 그 밖의 현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를 말한다)가 없을 것
비고: 제3호의 검사항목 중 색맹검사는 최초 신체검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처분권자는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선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경우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2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으로써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조사관이 그 재결을 집행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계류 중인 해양사고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6.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 다시 4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3.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호	면허취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업무정지 (신체검사 적합 결과 제출 시까지)		
5.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6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8.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0호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9.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1호	면허취소		

[별표 3] <개정 2019.8.14., 2023.2.16.>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제17조관련)

도선구의 명칭	구 역
군산항 도선구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서단, 연도 서단,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북위 35도56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내초도 산정(해발 59미터)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대산항 도선구	충청남도 안면도 남단으로부터 대화사도 남단, 연도 서단, 마서면 송석리 서단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으로부터 국화도 동단, 입파도 동북단, 학산서, 말록도, 풍도 남단, 안도 남단, 북위 36도51분47초 동경 126도07분03초를 거쳐 정자두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동해항 도선구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옥계항 해상구역 북서단(북위37도37분35초 동경129도03분08초 및 북위37도38분10초 동경 129도04분43초), 옥계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8분10초 동경129도05분22초), 묵호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3분22초 동경129도08분12초), 동해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9도10분22초), 삼척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26분15초 동경129도12분07초), 삼척항 해상구역 남동단(북위37도25분50초 동경129도12분07초) 및 삼척항 해상구역 남서단(북위37도25분44초 동경129도11분37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속초시 북동방(북위38도12분48초 동경128도36분01초)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조도 남단과 북위38도11분35초 동경128도36분0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호산항비화진 돌출부(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0분52초)로부터 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2분36초, 북위37도08분42초 동경129도23분56초 및 고포측 돌출부(북위37도08분42초 동경 129도21분53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45분02.89초 동경128도58분18.35초)로부터 북위37도46분14.90초 동경129도00분07.15초, 북위37도45분12.94초 동경129도01분38.99초, 북위37도44분01.21초 동경 129도00분22.21초, 북위37도44분15.71초 동경128도59분18.3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도선구의 명칭	구 역
마산항 도선구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박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목섬, 씨앗섬, 신수도북단, 신수도남단,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 울포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및 비진도 설피문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목포항 도선구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정주도 남단, 구례도 남단, 장좌도 북단, 불무기도, 가사도, 불도, 각홀도, 진도 서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완도읍 대구도로부터 달해도 서단과 신지도 서북각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부산항 도선구	동생말 끝단과 용호부두 방파제 끝단 및 광안대교 램프 끝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수역, 용호동 승두말부터 오륙도 등대, 생도, 영도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감말부터 두도등대, 자담말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다대포 자담말 서편 끝단, 동편등대부터 방파제 및 서편등대 끝단과 송부 옥상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및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가덕도 감수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여수항 도선구	대도로부터 진서로 그은 선과 대도로부터 남해도 평산갑(북위 34도44분41초 동경 127도50분12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54분50초 동경 127도50분12초),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7도47분30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단(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7도47분30초), 외난초도 서단(북위 34도54분50초 동경 127도48분57초), 천석산 서남 돌단(북위 34도57분01초 동경 127도50분4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도선구의 명칭	구역
울산항 도선구	동대산 삼각점(해발 116미터)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28분40초 동경 129도24분53초)과 북위 35도27분59초 동경 129도23분59초, 북위 35도22분21초 동경 129도26분10초와 북위 35도22분42초 동경 129도22분48초 지점(북위 35도25분05초 동경 129도24분51초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445미터의 원호(圓弧) 중 북위 35도22분21초 동경 129도26분10초 지점과 북위 35도22분42초 동경 129도22분48초 지점을 연결하는 분호),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 129도22분06초,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 129도21분1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돌안산 최동단(북위 35도30분59초 동경 129도26분47초)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인천항 도선구	김포시 양촌면(북위 37도35분36.05초, 동경 126도34분08.57초)으로부터 세어도 북단, 영종도 북단, 덕적도, 울도, 안도, 장안서, 창서, 대부도 남서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평택·당진항 도선구	대부도 남서끝단으로부터 창서, 장안서, 안도, 풍도 남단, 말륙도, 학산서, 입파도 북동단 및 국화도 동단을 거쳐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포항항 도선구	포항시 북구 용한리 동단(북위 36도07분15.7초 동경 129도24분58.5초)으로부터 북위 36도07분05.8초 동경 129도26분22.9초, 북위 36도 05분 53.6초 동경 129도27분50.8초, 북위 36도05분21.1초 동경 129도27분50.8초, 북위 36도05분20.7초 동경 129도29분44.3초, 북위 36도01분23.9초 동경 129도29분44.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제주항 도선구	제주항 서방파제 동북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과 서귀포항 강정지구 남방파제 끝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및 애월항 북방파제 동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비고 : 지리학적 경도 및 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별표 4]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제18조제1항관련)

<개정 2019.8.14., 2023.2.16.>

1. 인천항 도선구 중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인천항·경인항의 해상구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및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된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수역
 2. 대산항 도선구(보령항과 태안항을 포함한다)
 3. 군산항 도선구
 4. 목포항 도선구 중 장좌도 북단, 외달도 등대, 북위 34도46분12초 동경 126도16분00초, 화원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을 포함한 항계 안의 전 수역
 5. 여수항 도선구
 6. 마산항 도선구. 다만, 비진도 선평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은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삼천포항 수역은 선박규모에 관계없이 남동발전부두, 고성하이발전부두, 신항 4번 및 5번 선석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하며,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한다.
 - 가. 마산항 및 진해항 수역은 해당 항만의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나. 고현항 수역은 사두도 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다. 옥포항 수역은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 라. 지세포항 수역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7. 부산항 도선구
 8. 울산항 도선구
 9. 포항항 도선구.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 가능
 10. 동해항 도선구
 11. 평택·당진항 도선구 중 대부도 남서끝단(북위 37도11분52초 동경 126도32분08초),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 학산서(북위 37도07분22초 동경 126도31분48초), 입파도 북동단(북위 37도06분44초 동경 126도32분29초), 국화도 동단(북위 37도03분40초 동경 126도33분37초),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각(북위 37도02분10초 동경 126도33분35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12. 제주항 도선구. 다만, 제주항 도선구 안의 애월항 수역에서는 LNG운반선의 경우에만 강제도선의 대상으로 한다.
- 비 고
1. 강제도선 구역 안의 조선소 수역(「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수역)은 제외한다.
 2. 지리학적 경도·위도는 세계 측지계에 따른다.

[별표 5]

승 무 자 격(제18조제9항 관련)

<신설 2009.8.7>

1.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시 운 전 선 박	승 무 자 격
가. 총톤수 3만톤 이상 선박	1) 7년 이상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1급 항해사 자격 소지자
나. 총톤수 6천톤 이상 3만톤 미만 선박	1) 7년 이상 경력자 2)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3) 5년 미만 경력자로서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다. 총톤수 5백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1) 5년 이상 경력자 2) 5년 미만 경력자로서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조선소와 일시 계약의 방법으로 선박을 시운전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

시 운 전 선 박	승 무 자 격
가. 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	1급 항해사
나. 총톤수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박	2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다. 총톤수 1천6백톤 이상 3천톤 미만 선박	3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별표 6]

수 수 료(제32조제1항 관련)

<개정 2023.2.16.>

구분	금액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	20,000원
나. 도선수습생 전형 면접시험	20,000원
다. 도선사 시험	20,000원
2. 도선사면허증의 발급·재발급(개서)·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하면서 도선사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0원
나. 그 외의 사유로 발급·재발급(개서)·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2,000원

[별표 7] <삭제 1996.5.13.>

[별표 8] <삭제 1993.2.2.>

[별표 9는 별표 6으로 이동] <2009.8.7.>

☐ 1급 ☐ 2급 **도선사면허 신청서**
☐ 3급 ☐ 4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진 (3cm x 4cm)	도선구의 명칭
	도선사 시험 합격일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 취득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도선사면허 원부

사진 (3cm x 4cm)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도선구의 명칭	면허증 번호
	도선사 시험 합격일	면허증 발급일

[illegible]

- 69 -

(뒷면)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8.>

(1쪽)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날짜	주요내용	비고

상 별 사 항		
날짜	주요내용	비고

교육훈련 이수 사항		
날짜	교육과정명	비고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PILOT LICENCE
REPUBLIC OF KOREA

85mm×125mm[백상지 150g/㎡]

(2쪽)

1급 도선사면허증		사 진 (3cm×4cm)
면허증번호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2쪽)

2급 도선사면허증		사 진 (3cm×4cm)
면허증번호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2쪽)

3급 도선사면허증		사 진 (3cm×4cm)
면허증번호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2쪽)

4급 도선사면허증		사 진 (3cm×4cm)
면허증번호 :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도선구의 명칭		
⑤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도선법」 제4조에 따라 도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시·도지사		

(3쪽)

FIRST CLASS PILOT LICENSE		사 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CE :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 ____ day of _____ Republic of Korea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Mayor / Governor		

(3쪽)

SECOND CLASS PILOT LICENSE		사 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CE :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 ____ day of _____ Republic of Korea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Mayor / Governor		

(3쪽)

THIRD CLASS PILOT LICENSE		사 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CE :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 ____ day of _____ Republic of Korea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Mayor / Governor		

(3쪽)

FOURTH CLASS PILOT LICENSE		사 진 (3cm×4cm)
NUMBER OF PILOT LICENCE :		
NAME		
BIRTH DATE		
ADDRESS		
PILOT DISTRICT		
EXPIRATION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is duly qualified by Korea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Pilotage Act. Registered ____ day of _____ Republic of Korea _____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_____ Mayor / Governor		

(4쪽~9쪽)

면 허 증 확 인 란

날 짜	확 인 사 항	확인 인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진 (3cm x 4cm)	면허증 번호	
	면허증 발급일	
	도선구의 명칭	
	재발급 (개서)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개서) 사유	

「도선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의 재발급(개서)을 신청합니다.

일 년 월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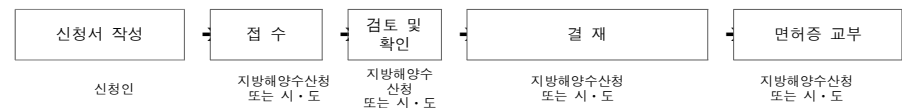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은 헤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만 해당) 2. 도선사면허증 분실 경위서(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 1부 3.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만 해당) 1부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재발급의 경우만 해당) 2장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처리절차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7. 9. 21.>

도선사면허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사진 (3cm x 4cm)	면허증 번호
	면허증 발급일
	도선구의 명칭
	면허증 유효기간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직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도선구의명칭			
면허증 번호			
면허관청			
최초 면허 취득일			
최종 면허 갱신일			
면허 취소일(업무정지 기간)	. . . ~ . . .		
면허취소(업무정지) 사유			

「도선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사 면허 취소(업무정지)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면허취소(업무정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지방 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28.>

(앞쪽)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

※ 희망(수습) 도선구 란에는 하나의 도선구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한자:	사진 (3cm x 4cm)
생년월일(상벌)			
주소	(전화번호 :)		
해기사면허증	면허등급:	발급일:	발급기관:
선장의 직무로 업무 정지를 받은 횟수		금고 이상의 형벌 사항	
희망(수습) 도선구		필기시험 합격일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 증명서(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모든 승선경력)을 말함] 2. 도선사시험: 없음

절 취

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3cm x 4cm)
	년도 도선수습생 전형(도선사)시험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절 취
유의사항

- 응시표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지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답안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검정색·파란색 유성펜 또는 만년필)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의 오른쪽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에서는 흡연,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 물품의 대여를 절대 금하며, 일단 입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임의로 퇴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즉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향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5.>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면제 번호		제 호					
선장	성명			생년월일			
	선원수첩 번호			해기사면허 번호			
선박 제원 (諸元)	선명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총톤수			국적			
	소유자			용도			
입항· 출항 사실	선명						
	총톤수						
	입항일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입항·출항 횟수	회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 또는 인)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강제 도선 면제를 신청합니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 제 도선을 면제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경력증명서(조선소에 상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 1부	수수료 없음		
기 타	입항·출항 사실이 6회 이상인 경우는 입출·출항 사실을 별 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토 및 확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결 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면제증 교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2.>

도선료(도선선료)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인 (도선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적용 도선구의 명칭	
	적용 예정일	
	변경 사유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
고)합니다.

일 년 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 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이를 갈음함) 1 부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해양수산부	→ 검토 및 확인 해양수산부	→ 수리 해양수산부	→ 통보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5.>

(앞쪽)

제 호

출입 ·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출입 · 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위 사람은 「도선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검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1.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1999.5.13.>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1999.5.13.>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1999.5.13.>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2009.8.7.>

<(구)도선관계법령 중 도선사 정년연장 관련 조항>

————< 법적 근거 >————

법률 제7788호(2005.12.29) 및 대통령 제19577호(2006.06.29), 해양수산부령 제341호(2006.06.29)에 의거 2006.06.30 이후에 도선사면허를 받는 자에 대한 정년연장이 폐지됨에 따라 2006.06.29 이전에 도선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정년연장 허가를 위하여 이를 보존·사용하고자 함.

(구) 도 선 법	(구) 도 선 법 시 행 령	(구) 도 선 법 시 행 규 칙
第7條(導船士의 停年) 導船士는 65歲까지 導船業務를 할 수 있다. 다만,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業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者에 대하여 導船士의 需給狀況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年の 범위내에서 導船士의 停年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7.1.13>	제2조의2(정년연장) ①도선사가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에 달하기 30일전까지 도선사정년연장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정년연장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도선사에 대하여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65세에 달한 날 이전 최근 3년의 기간중 법 제9조제1항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면허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개정 99.8.23, 2005.12.9>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99.3.3 대통령령 16172호> <본조신설 97.7.28>	제8조(도선사의 정년연장) ①영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위한 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7. 11. 25> ②도선사가 정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년에 달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선사정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25, 99.5.13, 2002. 11.21, 2004.8.7., 2005.12.23> 1. 삭제<2002.11.21> 2. 삭제<2002.11.21>
第37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은 법 제37조의 규	

(구) 도 선 법	(구) 도 선 법 시 행 령	(구) 도 선 법 시 행 규 칙
<개정 97.1.13>	정에 의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1.4.18, 92.12.31, 96.8.8, 97.5.24, 99.3.3>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증의 교부·재교부 및 개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4.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강제도선의 면제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이용료의 징수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 선 구 간 고 시

<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관련 조항>

도 선 구 간 고 시

제 정 2009. 12. 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63호
 일부개정 2010. 12. 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41호
 일부개정 2011. 10. 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578호
 일부개정 2011. 11.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07호
 일부개정 2013. 11. 28.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 - 245호
 일부개정 2014. 01. 15.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 - 5호
 일부개정 2014. 06. 24.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 - 68호
 일부개정 2014. 12. 1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 - 133호
 일부개정 2015. 08. 1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 - 121호
 일부개정 2016. 01. 1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 - 5호

일부개정 2016. 06. 1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 - 73호
 일부개정 2016. 09. 2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 - 126호
 일부개정 2016. 12. 1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 - 195호
 일부개정 2017. 09. 0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 - 113호
 일부개정 2019. 08. 0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 - 129호
 일부개정 2019. 11. 1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 - 167호
 일부개정 2022. 01. 28.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 - 17호
 일부개정 2022. 08. 3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 - 141호
 일부개정 2023. 03. 2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 - 64호
 일부개정 2024. 05. 1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 - 53호

도선구의 명칭	도 선 구 간 (가나다순)
군산항 도선구	1. 제1도선점(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23분20초)과 군산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군산외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3. 군산항내에서의 이동
대산항 도선구	1. 보령도선점(북위 36도11분18초 동경 126도18분27초)과 보령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신도도선점(북위 36도51분47초 동경 126도07분03초)과 대산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3. 신도도선점과 태안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4. 장안대산도선점(북위 37도02분00초 동경 126도16분30초)과 대산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5. 신도도선점과 장안대산도선점간의 이동 6. 장안대산도선점과 말륙도선점(북위 37도07분39초 동경 126도26분41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7. 말륙도선점과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8. 보령항내에서의 이동 9. 대산항내에서의 이동 10. 태안항내에서의 이동 11.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내에서의 이동
동해항 도선구	1. 제1도선점(북위 37도32분40초 동경 129도09분02초)과 묵호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2도선점(북위 37도31분04초 동경 129도13분04초)과 동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제2도선점과 묵호항간 입항 또는 출항 4. 제2도선점과 옥계항간 입항 또는 출항 5. 제2도선점과 삼척항간 입항 또는 출항 6. 제3도선점(북위 37도25분40초 동경 129도12분52초)과 삼척항간 입항 또는 출항 7. 제4도선점(북위 37도37분22초 동경 129도06분22초)과 옥계항간 입항 또는 출항 8. 제2도선점과 속초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9. 제5도선점(북위 38도11분25초 동경 128도37분22초)과 속초항간 입항 또는 출항 10. 호산항도선점(북위 37도09분30초 동경 129도25분00초), (북위 37도12분25초 동경 129도25분00초)과 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1. 묵호항내에서의 이동 12. 동해항내에서의 이동 13. 삼척항내에서의 이동 14. 옥계항내에서의 이동 15. 속초항내에서의 이동 16. 호산항내에서의 이동 17. 제6도선점(북위 37도44분12초 동경 129도02분08초)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 입항 또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제7도선점(북위 37도46분00초 동경 129도00분32초)간 출항 18.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내에서의 이동
마산항 도선구	1. 마산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도49분12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마산도선점과 진해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3. 마산도선점과 고현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4. 제1도선점(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128도44분34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5.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6.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7. 제2도선점(북위 35도08분42초 동경 128도36분18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8. 제3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8도42분07초)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9. 제4도선점(북위 34도55분26초 동경 128도33분52초)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10. 제5도선점(북위 34도56분16초 동경 128도45분46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1. 제6도선점(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43분20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28도05분15초)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 제8도선점(북위 34도49분11초 동경 128도48분52초)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 제9도선점(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50분12초)과 통영LNG 생산기지간 입항 또는 출항 14의2. 제10도선점(북위 34도45분11초 동경 128도26분52초)과 통영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16.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17.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18.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9.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20.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20의2. 통영항내에서의 이동 21.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22. 제1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만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선박) 23. 마산도선점과 통영 LNG 생산기지만 입항 또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
목포항 도선구	1. 제1도선점(북위 34도27분42초 동경 126도03분45초)과 제2도선점(북위 34도46분00초 동경 126도15분00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제2도선점과 목포신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3. 제2도선점과 목포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4. 목포신항과 목포내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5. 목포신항내에서의 이동 6. 완도항 도선점(북위 34도17분30초 동경 126도48분30초)과 완도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7.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8. 완도항내에서의 이동
부산항 도선구	1. 제1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9도08분47초)과 북내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북외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북내항과 북외항간 입항 또는 출항 4. 제2도선점(북위 35도01분41초 동경 129도02분22초)과 감천항간 입항 또는 출항 5. 부산신항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128도49분15초)과 부산신항만간의 입항 또는 출항 6. 부산항 및 감천항내 이동 7. 부산신항만내에서의 이동 8. 용호부두내에서의 이동 9. 제1도선점과 용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0. 다대포항내에서의 이동 11. 제2도선점과 다대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여수항 도선구	1. 제1도선점과(북위 34도41분00초, 동경 127도56분00초)과 여수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광양항간(백도-삼남부두) 입항 또는 출항 3. 제1도선점과 광양제철소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4. 제1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5. 제1도선점과 울촌 사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6. 제1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7. 제1도선점과 광양항 LNG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8. 제2도선점(북위 34도44분05초, 동경 127도49분05초)과 여수항간 입항 또는 출항

	9. 제2도선점과 광양항(백도-삼남부두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10. 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1. 제2도선점과 광양항(GS제2제품부두-송도구역)간 입항 또는 출항 12. 제2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3. 제2도선점과 하동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 제2도선점과 울춘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5. 광양항내와 울춘 산업단지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6. 제2도선점과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7. 광양항내와 태인도 시멘트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8. 제2도선점과 광양항 LNG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 19. 광양항내에서의 이동(울춘산업단지부두와 태인도시멘트부두 제외) 20. 여수항내에서의 이동 21. 하동항내에서의 이동 22. 제1도선점과 W외측구역간 해상유류이송 작업을 위한 입항 또는 출항 23. 제2도선점과 W외측구역간 해상유류이송 작업을 위한 입항 또는 출항
울산항 도선구	1. 제1도선점(북위 35도21분10초 동경 129도25분28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4. 제1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5. 제1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6. 제2도선점(북위35도20분18초 동경129도27분07초)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7. 제2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8. 제2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 제2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0. 제2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1. 울산항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 제3도선점(북위35도19분03초 동경129도28분33초)과 원유부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 제3도선점과 울산북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4. 울산항내에서의 이동 15. 미포항내에서의 이동 16. 온산항내에서의 이동 17. 원유부이에서의 이동 18. 울산남신항내에서의 이동 19. 울산북신항내에서의 이동

인천항 도선구	1. 팔미도선점(북위 37도20분22초 동경 126도28분18초, 다만, 폭풍주의보 발효시는 북위 37도22분40초 동경 126도32분24초)과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이 지정한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팔미도선점과 인천항 선거내간 입항 또는 출항 3. 팔미도선점과 인천 북항 또는 경인항도선점(북위 37도30분36초 동경 126도35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4. 팔미도선점과 신국제여객터미널간 입항 또는 출항 5. 장안인천도선점(북위 37도04분40초 동경 126도16분05초, 다만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북위 37도06분41초 동경 126도19분06초)과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팔미도선점과 동백도선점(북위 37도13분50초 동경126도13분05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6. 팔미도선점과 남항·연안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7. 장안도선점과 북장자서 묘지간의 입항 또는 출항 8. 북장자서 묘지와 팔미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9. 인천항 정박지와 인천항 선거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0. LNG선의 장안인천도선점과 북장자서간의 입항 또는 출항 및 북장자서와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1. LNG선의 북장자서와 인천 LNG 터미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2. 장안인천도선점과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간의 입항 또는 출항 또는 및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동백도선점간의 입항 또는 출항 13. 장안도선점과 인천신항도선점(북위 37도19분10초 동경 126도27분35초) 간의 입항 또는 출항 14. 인천신항도선점과 인천신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15.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외) 16. 인천항내에서의 이동(선거내만) 17. 경인항도선점과 인천터미널(선거외)간의 입항 또는 출항 18. 경인항갑문통항구간 19.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간의 이동 20. 경인항내에서의 이동
제주항 도선구	1. 제주항 도선점(북위 33도34분00초 동경 126도33분00초)과 제주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서귀포항 강정지구 도선점(북위33도12분00초 동경126도31분24초)과 강정지구간의 입항 또는 출항 3. 제주항내에서의 이동 4. 강정지구내에서의 이동 5. 애월항 도선점(북위 33도31분00초 동경 126도21분18초)과 애월항 LNG 터미널간의 입항 또는 출항 6. 애월항내에서의 이동
평택·당진항 도선구	1. 장안평택·당진도선점(북위 37도03분22초 동경 126도17분17초, 다만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악화 시 북위 37도05분58초 동경 126도20분11초)과 입파도선점(북위 37도08분10초, 동경 126도29분53초)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대형 광탄선의 장안평택·당진도선점과 입파도선점간의 이동 3. 대형 광탄선의 입파도선점과 현대제철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4.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간의 입항 또는 출항

	5.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6. 입파도선점과 평택·당진항 내항 동·서부두간의 입항 또는 출항 7. LNG선의 장안평택·당진 도선점과 평택·당진항 LNG 터미널 간의 입항 또는 출항 8. 평택·당진항 내항 및 외항간의 이동 9. 평택·당진항내에서의 이동
포항항 도선구	1. 제1도선점(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과 포항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영일만항간 입항 또는 출항 3. 영일만항과 포항항간의 이동 4. 영일만항과 정박지간의 이동 5. 영일만항내에서의 이동 6. 포항항내에서의 이동

導 船 約 款
(導船法 第36條 및 導船法施行規則 第30條 關聯)

(원문)

도 선 약 관

第 1 章 總 則

第 1 條(約款의 適用) ①○○港 導船區의 導船約款에 關하여는 이 約款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이 約款에 定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法令 또는 慣習에 依한다.

第 2 條(導船士의 地位) ①導船士는 船舶의 交通安全과 運航能率의 向上에 寄與하며 船長의 助言者의 資格으로 導船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②船長의 安全運航에 對한 權限과 責任은 導船士의 乘船에 依하여 變更되지 아니한다.

第 2 章 導船의 引受

第 3 條(導船의 要請) 導船을 要請코자 하는 者는 導船開始 豫定時刻으로부터 ○時間前까지 要請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4 條(要請方法) ①導船을 要請하고자 하는 者는 書面, 口頭, 電信, 電話 또는 信號等 方法으로 正確하게 當該 導船區의 支會에 要請하여야 한다.

②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導船의 要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導船對象 船舶

의 船名, 總屯數, 吃水, 船舶의 全長 및 全幅, 貨物名, 導船開始豫定時刻, 導船區間, 檢疫與否 其他 必要한 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船舶이 特殊한 狀態인 境遇에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迅速하게 그 狀況을 通知하여야 한다.

④導船을 要請한 者가 導船要請 內容을 變更 또는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導船士가 導船을 하기 爲하여 支會를 出發하기 前까지 通報하여야 한다.

第 5 條(導船의 制限) 導船士는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境遇에는 導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船舶의 堪航能力이 不充分할 때
2. 氣象 本船의 狀態, 積荷의 種類 또는 水路等의 狀況을 參酌하여 運航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
3. 導船船의 航行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
4. 導船士의 乘下船에 對한 安全施設이 不備할 때
5. 導船士의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生命 및 身體에 危險의 憂慮가 있을 때
6. 船舶의 出入港 또는 港內移動에 關하여 地方海洋水產廳長의 許可가 없을 때.
7. 其他 不得已한 理由가 있을 때.

第 6 條(出港中止要請) 導船士는 船舶所有者 또는 其 代理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導船料를 支拂하지 아니할 때에는 管轄地方海洋水產廳長에게 當該船舶 또는 其 船舶所有者가 所有하는 다른 船舶의 出港中止를 要請할 수 있다.

第7條(大型船等の導船) 支會는 船舶運航의 安全을 期하기 爲하여 總屯數 3萬 屯 以上の 大型船 또는 特殊한 船舶을 導船하는 境遇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와 協議하여 2人以上の 導船士가 同時に 乘船하여 導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油槽船, LNG船, LPG船등 危險物(海洋汚染防止法 第2條 第1號에서 定한 기름 包含)을 積載한 船舶에 對하여는 반드시 2人以上の 導船士를 乘船하여야 하며, 自家 接岸施設(浮漂)을 갖춘 船舶의 所有者가 船舶繫留補助人(Mooring Master)을 乘船하여 導船士를 補佐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運營 91 572-657(95. 12. 30)에 依據 變更認可)

第3章 導 船

第8條(乘下船의 安全措置) ①船長은 導船士가 導船船에서 本船에 乘船 또는 下船할 때 風下舷側을 만들어 本船의 速度를 줄이거나 機關을 停止하는 등 導船士 및 導船船의 安全을 爲한 諸般安全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導船士用 사다리를 安全하고 清潔하게 維持하여야 하며 導船船에 適合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③船長은 恒常 멘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具備하여야 한다.
④船長은 夜間에는 導船士가 安全하게 乘·下船할 수 있도록 充分한 照明을 하여야 한다.

第9條(船長의 資料通報) 船長은 導船士가 乘船하였을 때에는 當該船舶의 總屯數, 吃水, 全長, 機關의 種類, 速力, 航海計器의 現狀 및 操舵의 不良 其他

必要한 事項을 導船士에게 알려야 한다.

第10條(船長의 協力義務) ①船長은 乘務員이 導船士의 操船上 助言을 迅速 正確하게 實行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恒常 監督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乘務員으로 하여금 港內 및 水路를 잘 살피도록하여 異狀이 發見 되면 即時 導船士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船長은 恒常 本船의 機關 및 錨를 使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導船士가 그 業務를 安全하게 遂行하는데 必要한 曳船等を 要請할 때에는 協力하여야 한다.

第11條(船長의 便宜提供) ①船長은 導船士가 導船을 하기 爲하여 本船에 乘船時 休養施設 其他 必要한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②船長은 導船士가 導船修習生을 帶同하는 境遇에도 導船士와 同等하게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12條(導船士의 強制同行禁止) 船長은 正當한 事由없이 導船士를 當該 導船區 밖으로 強制同行하지 못한다. 다만 氣象惡化等 不可避한 事由로 當該 導船區 밖으로 同行하는 때에는 當該支會에 그 事實을 迅速히 通報하여야 하며 이 境遇 導船士에게 適切한 便宜와 支會까지의 歸航에 所要되는 一切의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4章 導 船 料 等

第13條(導船證明書) 船長은 導船士가 그 業務를 終了하였을 때에는 導船士

가 提示하는 導船證明書에 所定事項을 記入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第14條(導船料 等) 導船料 및 導船船料는 導船法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第 5 章 補 償

第15條(損害賠償等) ①導船士, 導船修習生, 導船船船員이나 그 家族 및 支會는 本船側의 歸責事由에 依하여 導船船 其他 物件이나 生命, 身體와 所持品에 損害를 입은 境遇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導船士가 船舶을 導船한 후 檢疫등 船舶의 歸責事由로 因하여 船內 또는 檢疫所等に 收容되었을 境遇,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16條(免責) ①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導船士에게 導船을시켰을 境遇에 導船士의 業務上 過失로 因하여 當該船舶, 船長, 船員 또는 第三者에게 입힌 損害에 對하여는 導船士에게 責任을 묻지 아니한다. 이 境遇에 導船士는 當該 船舶으로부터 支拂받아야 할 導船料 및 導船船料의 全額을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請求할 수 없다.

②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導船士의 業務上 過失에 起因한 責任에 對하여 第三者가 直接 導船士에 對하여 提起한 訴訟 其他 請求의 結果 發生한 導船士의 第三者에 對한 債務中 當該 船舶에 關하여 導船士에게 支拂되거나 또는 支拂되어야 할 導船料의 全額을 超過하는 部分에 對하여는 導船士에

게 이를 補償한다. 단,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스스로 第三者에게 賠償하여야 할 境遇에 法令에 依하여 船舶所有者의 第三者에 對한 賠償責任을 制限할 수 있는 境遇에는 그 補償金의 額을 그 制限의 範圍內(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直接 第三者에게 賠償으로서 支拂한 金額이 있는 境遇에는 그것을 控除한 額의 範圍內)로 制限할 수 있다.

③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은 導船士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起因한 責任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導 船 區

[별표 1]

導船區	仁川, 釜山, 麗水, 蔚山, 大山, 平澤唐津, 馬山, 浦項, 群山, 木浦, 東海
-----	--

導 船 要 請 時 間

[별표 1]

導 船 區	導 船 要 請 時 間
仁 川	6
釜 山	3
麗 水	5
蔚 山	3
大 山	6
平 澤 · 唐 津	6
馬 山	6
浦 項	3
群 山	6
東 海	3
木 浦	6

附 則

1. 1980. 7. 16 海運港灣廳 認可
2. 改正 1988. 6. 8(運營 33772-3494)
3. 改正 1995. 12. 20(運營 91572-657)
4. 1999. 5. 3 韓國導船士協會 總會, 導船士一同 決議
5. 1999. 5. 1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협의·결정
6. 2009. 4.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113	제14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113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113
제13조(손실보상) 114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114	제6조(손실보상의 산정) 114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20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20	
제18조(벌칙) 121		
부 칙 <제19868호, 2023.12.29.>		
제2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24		별지 서식(국가필수도선사 지정 신청서) 132 별지 서식(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133 별지 서식(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13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등으로 여객이나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의 휴업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 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제4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제3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	2.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해당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장래 물동량 등에 관한 통계나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미만인 선박. 다만,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군수품,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製鐵) 원료 등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자(「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를 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다년도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받은 국가필수선박을 우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기준의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족 여부를 검토하여 12월 31일까지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때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한국해양진흥공사”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제1호의 수에서 제2호의 수를 뺀 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필수선박의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최대승선인원 2. 국가필수선박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의 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원의 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면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받은 자는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명	포함되어야 한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영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령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수를 제1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① 법 제6조에서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용도별 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등 발생 시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사항 4.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 개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 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2.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제11조(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박료로 한다. <개정 2020.7.28.>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료 및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선박료 및 전용 사용료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①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평가하여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자를 선정한 후 2월 말일까지 항만별·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①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우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 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그 자가 등록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업체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한 자에 대한 평가방법 등 체결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각 사업자별로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인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 및 「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받은 업무정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이 90일 미만일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25.] 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5.>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 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실보상금 = (A-B) x (C-D) A :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수 B :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제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 C :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 임금 D :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 임금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선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직 원 및 부원의 직종과 직급, 「선박법」 제8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2. 국가필수선박의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 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 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손 실보상금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 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입증·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금 지급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5.>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손실의 경우 이 영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자의 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은 같은 항에 따라 서면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 환수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환수절차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 또는 협약체결업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등: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 등 운용상황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협약체결업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등, 협약체결업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	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손실보상금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은 전체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독촉으로 정한 납부기한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6.2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업무 종사 명령 3. 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3의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업무종사 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취소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7.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8. 제13조제3항에 따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위탁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부 칙 <제16279호,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	1. 법 제6조에 따른 의견청취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의 실시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부 칙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 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857호, 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677호, 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18696호, 202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86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선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국 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 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 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500호, 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604호, 2024.6.25.> 이 영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표 1] <개정 2022.7.4.>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자	자격기준 (각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해당 항만에서 보유한 예선이 총 3천마력 이상일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경우 종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기간은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등록기간에 포함한다. 나. 전용사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을 것 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가. 항만용역업	1)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상시 작업자가 5명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나. 선박연료공급업	1)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한 기간(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자일 것 2) 보유한 연료공급선의 총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일 것 3)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별표 2]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위반 시 감액 비율(제16조제4항 관련)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1명	15%	30%	50%	전액
2명	30%	50%	전액	전액
3명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비고

1. 선원의 교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초과승선에 해당하는 기간이 교대 1회당 15일 미만이어야 한다.
2. 선체 고장 및 태풍 피항 조치 등으로 입항이 지연되어 선원 교대에 15일 이상 소요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입항 지연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신규 지정선박의 경우 지정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위 기준을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국제총톤수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선적항(국적)		
	지정기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 정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국제총톤수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선적항(국적)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의 수: 직원 명 / 부원 명					
	상세 신청 내용						
		선원명	직급	승선사유	승선 예정일	하선 예정일	승선기간
	1						
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 정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명	선박의 용도	
	국제총톤수	진수일(조선대에서 선박을 처음 물에 띄운 날)	
	지정 해제 신청 사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지정 해제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협약 분야		
	협약 기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선정 및 체결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

분 야:

명 칭:

소재지:

기 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의 사업자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선구의 명칭	도선사 면허 등급		
면허일	도선사면허증 유효기간	부터	까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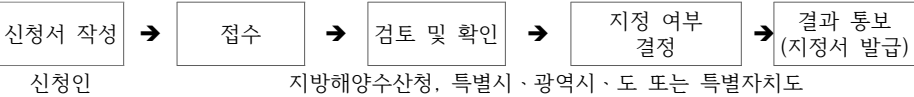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

- 도선사면허증 번호 :
- 도선구의 명칭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정기간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0일
청구인	성명 / 상호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개요	손실 내용 및 신청 이유			
	손실금액의 산출 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청구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청구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 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손실 개요	선박명		선박의 용도	
	손실보상 일수			
	손실보상 신청금액			

이
무
기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처리기관 : 한국해양진흥공사

- 134 -